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115028     |
| 의 퇴 인 | 이달곤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2. 4.13. |

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115028) 비용추계서 요약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 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지원(안 제32조의3 신설) |       | (강행규정)                  |
| -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| 기 수행                    |
| -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               | ×     | 기 수행                    |
| 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실태조사에 대한 일부추계 (유사사례 참고) |
| -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| 기 수행                    |
|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(안 제32조의4 신설)              |       | (임의규정)                  |
| - 자립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| ×     | 기 수행                    |
| -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사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II. 비용추계 결과(일부추계)

□ 추가재정소요 : 향후 5년 간 총 2억 9,500만원, 연평균 5,900만원

○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-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태조사 규모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추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[표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청소년쉼터 퇴소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실태조사(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) | 145  | -    | -    | 150  | -    | 295 | 59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--

## 차 례

---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비용추계 결과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. 재정수반요인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I. 비용추계의 전제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|
| 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|
| 2. 18세 이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(안 제32조의<br>3제1항제2호) 및 자립실태조사(안 제32조의3제1항 제3호) ..... | 4 |
| 3. 추계 결과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|

## 일러두기

---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## 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1억 4,500만원, 2026년 1억 5,0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억 9,500만원(연평균 5,900만원)으로 추계됨

○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－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태조사 규모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추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청소년쉼터 퇴소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실태조사(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) | 145  | —    | —    | 150  | —    | 295 | 59  |

주: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실태조사 규모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추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□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지원(안 제32조의3 신설)

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※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□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(안 제32조의4 신설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재정수반요인 중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(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)에 대하여 추계
- 동 개정안의 조항 중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지원<br>(안 제32조의3 신설) |          | (강행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(제1항제1호)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주거·소득·생계·금융·교육·진학·취업·훈련·건강·일상 지원: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수행(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필수영역 지원에 해당)<br>- 생활: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(월 30만원) |
| -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<br>(제1항제2호)         | ×        | · 기 추진 중 (보건복지부)<br>- 청년저축계좌·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(제1항제3호)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· 신규 추진<br>- 실태조사에 대한 일부추계(유사사례 참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(제1항제4호)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(안 제32조의4 신설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(임의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자립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| ×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 |
| - 사례관리               | ×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수행     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안 제32조의3제1항제1·2·4호 및 안 제32조의4)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기존 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([참고자료] 참조)
  - 개정안에 따라 기 수행 중인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, 향후 확대 추진할 자립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음
- (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)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  - (실시 주기)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의2(2022.6.22.시행예정)에 따라 실시되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(3년)<sup>1)</sup>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
  - (실시 비용) 보건복지부가 2020년 실시한 “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”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<sup>2)</sup>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가정
-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

1)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22일 시행예정인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

2)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

|            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%) | 2.1  | 1.6  | 1.6  | 1.5  | 1.5  | 1.5  | 1.5  |

## 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### 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
  - 2023년부터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정함

<비용추계 산식>

---

연간 추가재정소요<sub>t</sub> = 실태조사<sub>t</sub><sup>1)</sup>

이때, *t*는 추계년도 2023~2027년

1) 실태조사 비용은 2020년 기준 1억 4,000만원(보건복지부 유사사례,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조사)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(2023년 기준 1억 4,300만원)

---

### 2. 청소년쉼터 퇴소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실태조사(안 제32조의3 제1항제3호)

- 실태조사 용역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실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비용을 참조하여 1억 4,000만원을 적용
  - 202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보건복지부 유사사례 추진 현황

|                    | 실시                 | 소요비용       | 주기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| 2020.3월~11월(약 8개월) | 1억 3,600만원 | 3년 |

주: 실시 주기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「아동복지법」에 규정된 사항

자료: 보건복지부

### 3. 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1억 4,500만원, 2026년 1억 5,0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억 9,500만원(연평균 5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18세 이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  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자립실태조사<br>(안 제32조의3제1항제3호) | 145  | -    | -    | 150  | -    | 295 | 59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[참고자료] 현행 정부 관련 사업 추진 현황

[표] 개정안과 현행 사업의 비교

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| 유형   | 정부 현행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      | 강행규정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주거·소득·생계·금융·교육·진학·취업·훈련·건강·일상 지원: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수행(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필수영역 지원에 해당)<br>- 생활: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|
|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|      | · 기 추진 중<br>- 청년내일저축계좌(보건복지부)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     |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       |     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립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  | 임의규정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사업 (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)*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   |     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례관리                   |      | · 기 추진 중 (여성가족부)<br>-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: \*) 자립지원 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임  
자료: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(안 제32조의3제1항제1호) 18세 이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- ⇒ (여성가족부)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지원
  - 청소년자립지원관 유형
    - 이용형(비숙박형 이용시설): 주거연계 및 자립지원
    - 혼합형(숙박형 생활시설): 주거연계, 생활관운영 및 자립지원
  - 지원 내용: 주거지원, 자립지원(학업 유지 지원, 취업 교육 및 연계, 자립지원금 연계, 생활품 지원, 의료지원, 자립준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)
  - 지원 기간: 1년 이내(6개월씩 2회 연장 가능, 최대 2년 이내)
  - 운영 현황: 현행 10개소
    - 서울(2), 부산(1), 대구(1), 인천(2), 경기(3), 충남(1)
  - 지원 단가: 개소 당 2억 7,500만원 (인건비·운영비·사업비) 지원
    -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가 50%, 지방자치단체가 50% 부담
  - 2022년도 예산: 13억 1,700만원

- ⇒ (여성가족부)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통해 지원
- 지원 내용: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지원
  - 지원 대상: 20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
    -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(직전 1년은 연속 이용)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
  - 지원 단가(2022년 기준): 월 30만원(최대 36개월)
  - 2022년도 예산: 2억 5,200만원
    -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가 50%, 지방자치단체가 50% 부담

□ (안 제32조의3제1항제2호) 18세 이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
- ⇒ (보건복지부) 청년(내일)저축계좌 등을 통해 지원
- 지원 대상: 중위소득 50% 이하 15~34세 청년
  - 지원 내용: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씩 매칭하여 지원(3년 만기, 이자와 함께 지급)
    - 만기일 도래 전까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, 중위소득의 7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(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요건 삭제)
  - 2022년도 예산: 청년저축계좌(기존 가입자) 379억 6,800만원,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 이하) 44억 8,900만원
    - \* 청년저축계좌는 2022년 1월부터 신규 가입 불가,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도 하반기 신규 추진 예정

□ (안 제32조의3제1항제4호) 18세 이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- ⇒ (여성가족부)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지원
-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요원 1인당 사례관리 대상은 8명이 기본
  - 사후관리 기간: 6개월 (단,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수급기간 동안 사후관리 함)

□ (안 제32조의4) 자립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

- ⇒ (여성가족부)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
- 지원내용: 청소년쉼터 입소 아동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최적화된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하여, 효율적인 위기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복지·지원서비스 제공
  - 2022년도 예산: 51억 8,500만원
    - \* 청소년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임

□ (안 제32조의4)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- ⇒ (여성가족부)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수행
-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, 청소년자립준비 사정도구 개발·보급
  -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

□ (안 제32조의4) 사례관리

- ⇒ (여성가족부)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지원
- 사례관리: 1년 이내 (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, 2회 한도)
    - 사후관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사례관리 등록 가능함 (추가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되 신규대상자와 경합 시 신규자 우선)

---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사회비용추계과          |
| 과장      | 이진우              |
| 추계세제분석관 | 김우림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| 02-6788-3738     |
|         | wrkim@nabo.go.kr |

---